

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(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
1. 중대한 사고의 종류

가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

1) 전기화재사고

- 가)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
- 나) 「소방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
- 다)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

2) 감전사고(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)

3) 전기설비사고

- 가)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·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
- 나)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·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
- 다)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(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)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
- 라)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
- 마)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·하수도 시설, 배수갑문, 다목적댐, 공항, 국제항만, 지하철의 수전설비·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
- 바)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·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
- 사) 1,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·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
- 아)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

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
나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: 전력계통 운영사고[가목2)가)부터 다)
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]

2. 통보의 방법

가.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: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

- 1) 통보자의 소속, 직위, 성명 및 연락처
- 2) 사고 발생 일시
- 3) 사고 발생 장소
- 4) 사고 내용
- 5) 전기설비 현황(사용 전압 및 용량)
- 6) 피해 현황(인명 및 재산)

나.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: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(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)